

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30.(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4.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전문위원 장석현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34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4월 15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4월 23일

###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금액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8조
- 2)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제147조
-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5. ~ 2024. 3. 25.)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의 표준안<sup>1)</sup>에 맞춰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따른 본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요구 및 징계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 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추진실적을 법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000금액 이상인 안건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금액을 정함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